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6도3800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6노238 판결
판 결 선 고 2006.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을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

대법관 김능환 _____